## 긴 급 사 유 서

- 1. 사 업 명 : 재무관리 고도화 사업
- 2. 추진근거

---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<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>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 -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
## 1의 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

-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보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- ⑤ 제43조에 따른 <u>협상에 의한 계약</u>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<u>10일 전까지 공고</u>할 수 있다.
  -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<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>

<제4조(입찰공고)>

-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하는 경우</u>,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<u>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</u>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- ··· <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9호 제2조>
- □ (긴급입찰) <u>'24.12.31.까지 모든 경쟁입찰</u>은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 <u>국가</u> <u>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</u>하여 <u>원칙적으로</u> <u>긴급입찰로 발주</u> 가능

## 3. 사 유

○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9호)에 의거 '24.12.31.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 발주 가능

주택도시보증공사 시